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

□ 대상펀드명 : 트러스톤제갈공명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변경 사유

- (1) 투자 가능한 유동성자산 중 환매조건부 매수 추가
- (2) 자본시장법 및 지방세법 개정사항 반영
- (3) 소장펀드 수익자과세 안내사항 추가

□ 효력발생일 : 2015년 2월 4일

□ 변경 내용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서식개정에 의한 정정	<p><u>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u></p>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	<u>2014. 7. 31.</u>	<u>2014. 12. 31.</u>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 가능한 유동성자산 중 환매조건부 매수 추가	<u>환매조건부 매수</u>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u>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u>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 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 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 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u>15.4%(지방소득세 포함)</u>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 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u>지방소득세 1.4%</u>)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 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 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p>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과세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p>	<p>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과세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p>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납입액의 40% 공제(연240만원 한도). 다만,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 · 양도하거나 원금 · 이자 · 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p>	<p>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납입액의 40% 공제(연240만원 한도, <u>단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는 소득세액의 20%</u>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별도 부과). 다만,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 · 양도하거나 원금 · 이자 · 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p>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법 개정사항 반영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 임의해지	소규모펀드 처리방안 기재	(2) 집합투자업자는(1)의 ③ 및 ④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회계감사관련 내용 기재	③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

	<p><u>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u></p> <p>- <u>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u></p> <p>- <u>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u></p>
--	---